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노종면 · 박용갑 · 이훈기
허성무 · 최민희 · 정일영
맹성규 · 김남근 · 김주영
허종식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직권이나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신문 전에 발달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으로, “19세미만피해자등”을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를 “조사 또는 수사”로, “증인 신문”을 “신문”으로 본다.

제4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조력인의 참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u></p> <p>① <u>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형사 · 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직권이 나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발달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u></p> <p>③ <u>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u></p>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으로, “19세미만 피해자등”을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를 “조사 또는 수사”로, “증인 신문”을 “신문”으로 본다.

제42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2. (현행과 같음)